#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90

발의연월일: 2022. 1. 13.

발 의 자 : 홍정민 · 유정주 · 김정호

한준호 · 송기헌 · 오영환

이용우 · 김영배 · 변재일

김승남 · 신정훈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소투표가 가능한 사람을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거소투표를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도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제한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감염병에 걸려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감염병 확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염병의 확진 또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

소·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거소투표 신고 이후 열람·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등을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시설 및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등이 있는 곳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하여 감염병 유행 시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8조, 제40조, 제44조 및 제148조).

####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전단 중 "제5호까지에"를 "제5호의2까지에"로 하고, "서면으로"를 "서면이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를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로 한다.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통·리 또는 반의 장의"를 "통·리 또는 반의 장의, 제4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설에서 치료 또는 격리 중인 사람은 해당 시설의 장의"로, "받아야 한다"를 "받아야 하며, 제4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자가(自家)에서 치료 또는 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自家)치료 또는 격리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8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가 (自家) 또는 시설 격리 중인 사람

제40조제1항 전단 중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 간"을 "다음 각 호의 기간에"로, "선거인명부를"을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선거인명부를" 을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 2.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일간

제40조제2항 본문 중 "選擧人名簿"를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 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제41조·제42조 및 제43조에서 같다)"로 한 다.

제44조제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을 "선거일 전 14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0일)"로 한다.

제148조제1항 단서 중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읍 • 면 • 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 2. 읍·면·동 관할구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및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 3.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	
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 제4항제1호부터 <u>제5호까지</u>	제5호의2까지
<u>에</u> 해당하는 사람(제15조제2항	<u>에</u>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	
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u>서면으로</u>	<u>서면이나</u>
신고(이하"거소투표신고"라 한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
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편에 의한 거소투표신고는 등	
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	
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2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	
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 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 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 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 다.

#### 1. • 2. (생략)

③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은 통· 리 또는 반의 장의,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은 해당 선박소유자(제2항제2호에 따른 선

<u>서면[승선하고 있는 선</u>
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
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u>포함한다]이나 구·시·군이 개</u>
설 ·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하여
1. • 2. (현행과 같음)
3
리 또는 반의 장의, 제4항제5호
<u>의2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설에</u> 서 치료 또는 격리 중인 사람은
기 시표 또는 역부 중인 사람은

<u></u> 받아야 하며, 제4항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자가(自家)에서 치료 또는 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自家)치료 또
는 격리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1. ~ 5. (현행과 같음)

- 1. ~ 3.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투표할 수 있다.
- 1. ~ 5. (생 략)

<신 설>

6. (생략)

⑤ ~ ⑧ (생 략)

第40條(名簿閱覽) ① 구・시・군 | 第40條(名簿閱覽) ① ------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해 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 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選擧權者는 누구든지 選擧

- 5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에 따라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제42조제2 항에 따라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 6. (현행과 같음)
- ⑤ ~ ⑧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선거인명부 및 거소

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 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 인명<u>부를</u>-----

- 1.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작성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 일간
- 2.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일간
- -선거 (2)

人名簿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하다.

#### ③ (생략)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②·③ (생 략)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
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
·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
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
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

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
부를 포함한다. 이하 제41조ㆍ
제42조 및 제43조에서 같다)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
선거일 전 14일(대통령선거의
<u>경우 선거일 전 20일)</u>
②·③ (현행과 같음) 기149조(시커투표사이 서키) ①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 해당하는-----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 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⑥ (생 략)

- 1. 읍 면 동 관할구역에 군부 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2. 읍·면·동 관할구역에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감염병관리시 설 및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이 있는 경우
- 3.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 치 ·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 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② ~ ⑥ (현행과 같음)